- 연가보상비 지급 특정감사 -

감사 결과 처분 내용

2021. 7.

당 진 시

(감사법무담당관)

Ⅰ. 감 사 개 요

○ 감사대상 : 전부서

○ 감사기간 : 2021. 5. 10. ~ 5. 21.(10일간)

○ 감사범위 : 2018 ~ 2020년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 3,486건

○ 감사인원 : 감사팀장 외 3인

Ⅱ. 감 사 성 과

○ 행 정 상

(단위 : 건)

계	처 분 지 시				비 고
	시 정	주 의	개선요구	현지처분	
1	1	-	-	-	

○ 재 정 상

(단위 : 천원/건)

계	변 상	추 징	회 수 등	기 타
6,557 / 1	-	-	6,557 / 1	

Ⅲ.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

연번	제 목	지적사항 심의 내용								비 고
		행정상		재정상(천원)			신분상			
		시정	주의	변상	추징	회수 등	주의	훈계	징계	
	1건	1				1 (6,557)				
1	연가보상 업무 소홀	○				○				

1 연가보상 업무 소홀

○ 공무원은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(이하 복무규정)」 제6조, 제7조의11에 따라 정신적·신체적 휴식을 취함으로써 근무능률을 유지하고 개인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.

(연가일 수 및 연가보상비 지급)

○ 복무규정 제7조에 따라 공무원의 재직간별 연가일수는 [표1]과 같고,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,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 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월·저축할 수 있다(2020년 신설)

(연가의 가산)

○ 해당 연도에 결근·정직·강등·직위해제 사실 및 복무규정 제7조의2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은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(합계 2일)을 가산한다.

○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된 지급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 일수가 1일 이상 있는 경우에 연가가산대상이 된다.

○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 단,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 등을 위한 반일연가·지각·조퇴·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병가를 사용한 것이므로 연가가산대상이 되지 않음

(연가 일수의 공제)

○ 복무규정 제7조의2(연가 일수의 공제)에 따라 결근·정직·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가 있는 연도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하고,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 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,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,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.

$$\frac{\text{해당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(월)}}{\text{12개월}} \times \text{해당연도 연가일수}$$

(연가 당겨쓰기)

○ 공무원(연도 중 휴직·퇴직 예정인 자 제외)에게 연가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○ 2018~2020년 연가보상비 지급내역을 점검한 결과 다음 [표3]과 같이 휴직, 당겨쓴 연가의 정산, 연가보상비 지급 후 연가사용, 총연가일수 및 잔여연가일수 계산 오류 등으로 인해 연가보상비가 과오 지급된 사실이 있다.

【 처 분 요 구 】

부당하게 지급된 연가보상비 6,556,800원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, 앞으로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에 따라 연가보상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